

1. 개정이유

택지·도시개발 및 대지조성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산정기준인 「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」를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표준개발비 재산정

택지개발사업 등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표준개발비를

1 제곱미터(m²)당 334,100원으로 함

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개정고시안

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

1. 표준개발비 : 1 제곱미터(m²)당 334,100원
2. 적용기간 : 2024년 7월 1일 ~ 추후 고시일까지
3. 재검토기한

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적용례) 개정규정은 이 고시의 적용기간 이후 최초로 승인 또는
인가 등(변경승인 또는 변경인가 등은 제외한다)을 받는 사업부터 적
용한다.